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96
----------	------

발의연월일 : 2025. 2. 28.
발 의 자 : 문기호, 정재환, 김도
운,
문희성, 안영호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 등에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대부, 사용·수익,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5. 2. 21. ~ 2. 27.(6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체육회 및 중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기간은 대부기간의 개시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15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p> <p>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중구체육회 및 울산광역시중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기간은 대부기간의 개시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p>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수익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관 계 법 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3호, 2024. 3. 26., 일부개정]

-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 가. 현금
 - 나. 유가증권
 -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 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3. 작성자

- 소 속: 교육체육과
- 직 급: 지방행정7급
- 이 름: 윤경빈
- 연락처: 052-290-3672